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827호 2011. 6. 7.(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-2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
고시안 ----- 1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599호 공시송달 공고 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613호 폐기공인 공고 ----- 4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616호 인천광역시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62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 ----- 9

회
람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- 27호

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(일부 개정 법률안 2011.3.29 시행·공포)제3조에서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다 음

○ 감면대상

-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건축물(주택제외)과 그 부속 토지
- 구제역 발생으로 소·돼지 등의 가축이 살처분 된 가축의 매몰지
- 감면대상
 - (1) 건축물(축사)

피해농가	건축물 소재지	면적(㎡)	소유자	비고
조**	오류동 143-2	128	조**	
	오류동 143-3	648	조**	
이**	오류동 174	2,277	이**	
**축산	불로동 247-16	2458	**축산	

(2) 토지

피해농가	토지 소재지	면적(㎡)	소유자	비고
조**	오류동 136-2	1,683	조**	
	오류동 137	648	조**	
	오류동 138	1,164	조**	
	오류동 141	959	박**	매몰지
	오류동 142	3,038	조**	
	오류동 142-1	466	조**	
	오류동 142-2	502	조**	
	오류동 142-3	574	조**	
	오류동 142-4	355	조**	
	오류동 143	350	조**	
	오류동 143-1	536	조**	
	오류동 143-2	516	조**	
	오류동 143-3	1,457	조**	
	오류동 144	96	조**	
	오류동 산90-1	2,876	박**/유**	
	오류동 산94	3,868	조**	매몰지
	오류동 산97	595	조**	
	이**	오류동 174	5,266	이**
김**	금곡동 273-4	1,092	김**	
	금곡동 273-1	2,974	김**	매몰지
유**	오류동 431	2,764	양**	
	오류동 432	2,043	김**	매몰지
	대곡동 206	2,489	박**	매몰지

○ 감면기간

- 건축물(축사 등)과 부속 토지 : 1년 (2011년)
- 가축의 매몰지 : 3년 (2011년~2013년)

2011. 5 . 31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599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「가좌완충녹지 3단계 조성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되거나 송달할 수 없음을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(송달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고 이의가 있으신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 업 명 : 가좌완충녹지 3단계 조성공사
2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3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
4. 열람기간 : 2011. 6. 3 ~ 2011. 6. 18
5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(☎ 032-560-4805)
6. 의견서제출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
7.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

연번	물건지	소유자 성명	주소	비고
1	인천 서구 가좌동 319-3	성운기	인천시 북구 가좌동 322	
2	인천 서구 가좌동 319-4			
3	인천 서구 가좌동 319-17			
4	인천 서구 가좌동 319-18			
5	인천 서구 가좌동 319-19			
6	인천 서구 가좌동 319-20			
7	인천 서구 가좌동 319-7	정수천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9-7	

8. 본 공고에 대한 해당서류는(재결서 정본 등)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(☎ 032-560-4805)에 비치되어 있으니 소유자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1. 6. 3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613호

폐기공인 공고


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
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.

2011. 6. 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폐 기 사 유 : 인증기 미사용
2. 폐기 연월일 : 2011. 6. 1
3. 폐기공인명 및 인영 : “붙임참조”

폐 기 공 인 인 영

공 인 명	규 격(cm)	공인인영	비 고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/민원봉사과 민원전용2 (인증기)	2.4×2.4		인증기 미사용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616호

『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1년 6월 3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「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1988. 5. 1. 제정, 1989. 3. 9. 일부개정된 『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』를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띄어쓰기 등 전반적인 용어 정비
- 포상금 지급액 개정안 제5조)
 - 본안사건(행정·민사)의 경우
 - : “1인당 100,000원 이내”를 “1건당 300,000원 이내”로 개정
 - 신청사건 및 소액민사사건의 경우
 - : “1인당 20,000원 이내”를 “1건당 100,000원 이내”로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(단체) 또는 개인은 2011. 6. 23.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(참조: 기획홍보실장, 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 560-4076 Fax 560-4049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및 그 사유) 또는 관련 요구사항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기재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”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서구청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①다음 각호의 1에”을 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“소송 수행자”를 “소송수행자”로 하며,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며, “70이상”을 “70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“70이상”을 “70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②제1항 각호의 1에”를 “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며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”을 “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①구”를 “① 구”로 하고,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②포상금은”을 “② 포상금은”으로 하고,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①포상금은”을 “① 포상금은”으로 하고,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인당 100,000원”을 “1건당 30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인당 100,000원”을 “1건당 300,000원”으로, “1인당 20,000원”을 “1건당 100,000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1인당 20,000원”을 “1건당 10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
중 “②본안”을 “② 본안”으로 하며, “지급액의”를 “제1항 각 호의 지급액의”로 하고,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“지급받은자”를 “지급받은 사람”으로 하며, “자에게는”을 “사람에게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620호

입 법 예 고 문

「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. 6. 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자치법규명 :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의 규정이 제정되어 '11.3.1.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(구세)의 세액공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자치단체 조례에서 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” 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문 신설(안 제14조의2)
 -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부자(정기분) :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
 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 납부자: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
 - 보통세,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
 - 시·구세의 경우 시세 먼저 세액공제
 -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(지방교육세)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**2011년 6월 23일까지**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: 세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560-4192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참고사항

5. 공청회 개최계획 :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

6. 참고자료 :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「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 후 실제 납부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 후 실제 납부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적힌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, 시세와 구세가 함께 적힌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,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(지방교육세)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제14조의2 규정은 2011년 1기분 재산세 과세 분부터 적용한다.